

(비상장법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문

제16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4조에 의하여 제16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일 시 : 2020년 05월 11일 (월) 오전 10시

2.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울암로 6 (주)덴티스 의료기기사업부 3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제1호 의안 관련)

제1호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이 가결된 경우,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정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별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본 주주총회는 경비절감의 목적을 위해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참석 주주분들께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주주총회 참석 부탁드립니다.

[별첨]

1. 합병의 개요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2020년 04월 24일

주식회사 덴티스
대표이사 심기봉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별첨 1] 합병의 개요

1. 합병의 목적

하나금융 9 호기업인수목적(주)(이하 "합병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정관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병을 결정하였으며, (주)덴티스(이하 "피합병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임플란트 및 3D 프린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기업가치 상승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 향후 투자 등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 확대, 대외인지도 제고를 통한 기업 이미지 향상 및 신뢰성 확보와 우수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SPAC 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결정하였습니다.

2. 합병의 방법

하나금융 9 호기업인수목적(주)가 (주)덴티스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덴티스는 해산합니다.

3. 합병의 요령

(1) 피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피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 원) 1 주당 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 원) 7.6585000 주를 교부합니다.

(2) 교부금의 지급

합병회사인 하나금융 9 호기업인수목적(주)는 피합병회사인 (주)덴티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하나금융 9 호기업인수목적(주)가 피합병회사인 (주)덴티스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및 단주매각대금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존속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소멸법인도 역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제 4 항과 동법 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4) 합병비율

가. 합병비율 :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비율은 1: 7.6585000 로 함.

나. 합병비율의 산출근거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5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의결(2019 년 10 월 11 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9 년 10 월 11 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9 년 10 월 10 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 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증가, 최근 1 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증가, 최근일의 증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 분의 30 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5.93%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6 조의 5 제 2 항 2 호 나목 및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 4 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6 조의 5 제 3 항 제 2 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과 5.0 의 비율을 본질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5)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와 수

합병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68,510,773 주

(6)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 527 조의 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0 년 05 월 12 일부터 2020 년 06 월 11 일까지 1 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조건

[제 12 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의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12.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2.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 12.2 조, 제 14.1 조, 제 14.2 조 및 제 14.8 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8)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

- 주식매수예정가격 : 15,317 원
- 반대의사통지와 매수청구의 세부 내용은 동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주요일정

이사회결의일		2019 년 10 월 11 일
합병계약일		2019 년 10 월 11 일
합병계약 변경계약일		2019 년 12 월 02 일
		2019 년 12 월 23 일
		2020 년 03 월 24 일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2020 년 03 월 27 일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2020 년 04 월 13 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20 년 04 월 14 일
	종료일	2020 년 04 월 21 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2020 년 04 월 24 일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시작일	2020 년 04 월 24 일
	종료일	2020 년 05 월 10 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0 년 05 월 11 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0 년 05 월 11 일
	종료일	2020 년 06 월 01 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0 년 05 월 12 일
	종료일	2020 년 06 월 11 일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2020 년 06 월 10 일
합병기일		2020 년 06 월 12 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0 년 06 월 15 일
합병등기예정일		2020 년 06 월 15 일
합병신주 교부일		-
합병신주상장(예정)일		2020 년 07 월 03 일

주 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2)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합병의 개요는 2020 년 04 월 21 일자로 전자공시된 당사의 합병증권신고서(최초제출 2020 년 03 월 27 일)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합병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하나금융 9 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전자공시의 합병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65 조의 5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 374 조의 2 및 동법 제 522 조의 3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주)덴티스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0 년 06 월 10 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주식매수 예정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5,317 원 (예정)
산출근거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피합병회사 합병가액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협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행사절차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2020 년 04 월 13 일) 현재 (주)덴티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반대의사 통지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며 주주총회 전일(2020 년 05 월 10 일 예정)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 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 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0년 05월 11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 522 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대구광역시 동구 을암로 6 2 층 (주)덴티스 전략재무팀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4. 기타 사항

절취선

주 식 매 수 청 구 서	
본인은 귀사의 합병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주
반대의사표시주식수	주
주식매수청구주식수	주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주식회사 덴티스 대표이사 귀하

20	21	22	23
----	----	----	----

주식회사 덴티스 대표이사 귀하

매수가격 조정 신청서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65 조의 5 제 3(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9 항)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매수가격에 반대하며 동규정에 의거하여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주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주식회사 덴티스 대표이사 귀하

주식회사 덴티스 대표이사 귀하